

의안번호	제2615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3. 5. 10.

고성군의회의원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5
----------	------

발의연월일: 2023. 5. 10.

발 의 자: 이정숙 의원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의원(6인)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2022. 12. 20.)』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의 가산 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안 제3조의2)
-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다. [별표]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공무원여비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1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의 공고 제2023- 호
 - 입법예고 기간:
 -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상시출장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중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를 “근무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km”를 “2킬로미터”로 한다. 제3조 중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를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내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적용하되,”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로, “조 제3항”을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고성군의 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u>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u>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u>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u></p> <p>③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u>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u>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u></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 ----- ----- --- <u>상시출장여비</u>----- ----- -----.</p> <p>② ----- ----- ----- ----- ----- ----- <u>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후단 삭제></u></p> <p>③ <u>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u> ----- ----- ----- ----- -----.</p> <p>제2조의2(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u>근무지</u> ----- -----</p>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② -----
2킬로미터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국내 여행-----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5. (생략)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생략)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

-----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하되, 준용하는 경우 ----.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
----- 제4항 -----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 조 제2항 및 제3항-----.
7.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5배 -----.

- ② (현행과 같음)
- <삭제>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현 행)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버스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제1호는 특실 실비, 제2호는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개 정) 삭제<2023. 00. 00.>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공무원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舢舨)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 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 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